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7. 24.(수)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 (1인)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삼석 위원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3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결안건 가> “2018년도 3~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8년도 3~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19-37-146)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8년도 3~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조사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재난방송 실시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를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경과입니다. '17년 9월에 9개 방송사 56건, '18년 6월에 11개 방송사 36건, '18년 10월에 3개 방송사 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난방송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조사 대상 선정 관련입니다. 정부는 '18년도 3분기와 4분기에 모두 273건의 재난방송을 방송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 경기방송 등 3개 방송사 4건에 대해 재난방송 의무위반 의심 사례를 방통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업자 소명과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주)경기방송 1건을 사실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가> 사업자 위반내역입니다. (주)경기방송은 재난지역 중 다수지역을 누락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재난방송 요청문에는 경기남부서해앞바다, 인천, 경기북부앞바다 지역의 재난방송 요청을 했는데 실제 방송내용은 인천광역시만 방송이 나갔습니다. <나> 사업자 의견입니다. 사업자

의견은 (주)경기방송의 의견진술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8년도 3~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심인 경기방송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입장)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종적으로 재난방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방통위가 판단하는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과태료 처분 당사자인 (주)경기방송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하겠습니다. 경기방송 대표이사이신 박영재 님 맞습니까?

○ 박영재 (주)경기방송 대표이사

- 예.

○ 이효성 위원장

- 경기방송 편성제작팀장님이신 노광준 님 맞습니까?

○ 노광준 (주)경기방송 편성제작팀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의견청취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방송 대표이사이신 박영재 님이 이번 과태료(안)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박영재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재 (주)경기방송 대표이사

- 경기방송 박영재입니다. 저희가 2018년 8월 말경에 재난방송 1건을 송출 못한 사실은 확인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편성제작팀장이 더 설명하겠습니다.

○ 노광준 (주)경기방송 편성제작팀장

- 편성제작팀장으로서 이 사건의 원인과 이후 대책에 대한 저희 방송사업자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재난방송 미실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저희도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작지만 재난방송만큼은 정말 규모에 상관없이 청취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던 방송사였습니다. 더구나 '재난

방송 취약지점이다'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시간이 바로 사고가 터진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였습니다. 따라서 제작인원이 적지만 일부러 연예인을 쓰지 않고 DJ나 제작진 역시 방송경력 10년차 이상으로 재난방송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고 충분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건이 터져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판단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은 23시 52분 59초에 1건, 26초 뒤 1건, 다시 2분 뒤 1건, 결과적으로 3분 사이에 3건의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 의무통보문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2018년 8월 23일 해당 일의 태풍은 '솔릭'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한반도를 관통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태풍 '매미'처럼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2, 3일 전부터 저희 방송사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역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한밤나라>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15분 간격으로 태풍 솔릭의 경로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 보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고가 터진 시간이 23시 52분 59초였습니다. 해당 시간은 23시 55분에 방송 듀레이션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늘 음악프로그램은 음악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해당 진행자는 51분 30초경에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클로징멘트를 했고 끝 곡이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심야시간대 스튜디오 사정이 원활치 않아서 다음 진행자를 위해 빨리 스튜디오를 빠져 나가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빠져 나가고 있는 시간에 태풍주의보, 경보 그리고 또 다른 태풍주의보가 들어와서 다시 스튜디오에 앉아서 30초간 리딩하고 방송하는 다소 우왕좌왕한 상황에서 한 가지 빠지고 한 가지를 방송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기는, 결과적으로 제시문을 제대로 리딩을 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3가지 이상의 연속된 제시문이 왔을 때 어떻게 방송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 논의를 해서, 그렇다면 진행자, 제작자 역시 방송하지 않았는데 방송을 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기술엔지니어링이 반드시 제시문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크로스체크를 해서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이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반적인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실 것입니다.

○ 박영재 (주)경기방송 대표이사

- 저희는 이미 재난방송 의무화 이전인 2016년부터 재난방송 송출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심야시간에도 문자 음성전환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의무화 이전에도 실시하고 있었고,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건도 누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심야시간 방송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실수를 한 건을 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편성제작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엔지니어가 바로 앞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방송 진행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약속을 드리고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이 건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

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저에게 의사 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 옥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시지요.

○ 허 옥 상임위원

- 심야시간인데다 짧은 시간에 고지문이 밀려들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TTS를 도입했으면 원칙대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이유는 이것이 11시 59분 익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 노광준 (주)경기방송 편성제작팀장

- TTS 자동변환장치 같은 경우 그 당시 편성구조로 봐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가동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 생방송으로 방송할 때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아예 켜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각지대의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현재로서는 재난 통보문에 대해 엔지니어와 아나운서가 크로스체크 하는 정도인데 그 이후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노광준 (주)경기방송 편성제작팀장

- 일단 저희는 훈련이나 교육이 충분히 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진행자당 1년에 세 번 정도의 리딩교육을 따로 받고 크로스체크 부분만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가청권역이 아닌 곳까지 전부 다 리딩을 하는 것이 청취자에게 도움은 되지만 재난방송이 미 실시 됐다는 것은 가청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이 됐느냐, 안 됐느냐이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를 낸 경기방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인정되지만 현행 법규의 핵심은 가청권역 내 재난지역을 제대로 방송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집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효과적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광준 (주)경기방송 편성제작팀장

- 저희가 그 점은 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돌아가서라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안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시 이후 심야프로그램은 상주하는 작가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미리 문안을 보고 필터링을 해서 가청권역을 빼서 진행자에게 따로 넘기는 시스템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작진의 현장 상황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보완할지는 나름대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영재 (주)경기방송 대표이사

- 가청권역 관련해서는 인천, 경기남부서해앞바다, 경기북부앞바다 이쪽이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가청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방송이 경기도 내에서 주파수를 3개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직 가청권역이 잘 안 되는 지역이 남양주시, 양평 등 이런 쪽들은 아직도 안 들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출력증강을 통해 보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경기방송이 그동안에는 재난방송 통보문을 성실하게 안내방송을 해 왔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가 처음인데 아마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심야시간에 통보문이 한꺼번에 1분 사이에 3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가청권역을 뽑아내서 방송하는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앞으로 식으로 대처하다가 또 위반이 나옵니다. 돌아가셔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전반에 대해 TTS는 새벽에 자동변환장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작동한다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방송진행자들에게 '이것 하지 않으면 재난방송 위반이다' 엄중하게 교육을 시켜서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특히 작가들이 문제인데 방송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겠습니까? 밖에서 원고를 만들어 주는 작가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잘 돌아가지 않는지 점검을 반드시 해서 다음에는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 경영 사정은 어떻습니까?

○ 박영재 (주)경기방송 대표이사

-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이 워낙 힘들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 박영재 (주)경기방송 대표이사

- 저희는 통계상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직원들과 합심해서 경영 재정 상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단 재작년, 작년 순이익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자세한 수치는 경영기밀이니까 제가 그것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태료를 자꾸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사정을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어쨌든 재난방송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따로 질문할 것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의견청취 한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한 경기방송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재 (주)경기방송 대표이사

- 지금까지 경과들을 정확히 말씀드렸고, 저희가 실수를 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처음인 만큼 깊이 배려해 주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피심인 측 의견진술인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경기방송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심인 관계자 퇴장)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사무처 검토의견 및 시정조치안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방송은 재난 예방·대피·구조·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경기방송이 재난지역 3개 중 2개 지역을 누락하여 방송한 것은 재난방송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과 2018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MBC가 8개 지역 중 5개 지역을 누락·방송하였고 YTN라디오가 3개 지역 중 2개 지역을 누락·방송하고 불교방송과 기독교방송이 7개 지역 중 5개 지역을 누락·방송하여 각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주)경기방송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발표한 재난지역 중 다수 지역을 누락·방송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에 따라 <붙임 2>의 위반내역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1,500만원

이며, 기준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이 가능합니다. 50%를 감경했을 경우 과태료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경기방송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안건 가>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재난방송 미실시에 따른 최근 과태료 부과 상황을 보면 2017년 20개 방송사에 92건, 그리고 작년 2분기까지 3개 방송사에 3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작년 3/4분기에는 한 곳만 위반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방송입니다.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심인 경기방송의 재난방송 실시 의무 위반 건은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자연재해와 사회재해가 변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심야 근무시간대에는 오랜 경력의 진행자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방송사들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가 잇따라 발령된 상황에서 피심인이 가청권역의 재난지역에 대해 방송에서 누락한 것은 중요한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2017년~2018년 상반기까지 미실시 재난방송이 없었던 데다 재난방송 처리 시스템을 보강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실히 개선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태풍주의보에 의한 대치, 또 태풍경보에 의한 대치 그리고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3건의 연속된 재난통보문에 대해 당초 가청권역 3곳만 방송을 해도 뒀어도 불구하고 무려 32건 곳 전 권역 관련해서 성실히 방송하려고 노력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가의2와 3에 따라 부과금액을 50%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50% 감경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입니다. 라디오가 TV 같은 경우 재난방송 요청문이 32곳 '태풍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하는 곳을 흘림자막으로 쪽 멘트 없이 화면에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맞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거의 위반이 없습니다. 재난통보문이 오면 자동으로 쪽 흘림자막으로 아래 하단에 내기만 하면 되는데 라디오는 일일이 방송진행자가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음악방송 또는 다른 대담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다 이것을 일일이 읽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가청권역이 아닌 곳까지도 읽는 데 대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위반사항을 다르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체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구되거나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경영상태를 제가 물어봤지만 건당 1,500만원씩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다 방송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매체의 특성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심야시간에 그런 발령이 나면, 영세 중소·군소방송사는 또 심야시간에 대부분 녹음방송으로 대체를 합니다. 물론 TTS라는 자동변환장치로 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라디오 매체는 위반을 규정하는 것이 조금 다른 TV매체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이것 굉장히 타격이 큼니다. 1,500만원씩 두 번 맞으면 3,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난방송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에 맞게끔 개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경기방송은 태풍주의보에 밤 12시 자정에 가청권역이 아닌 곳까지도 일일이 다 방송을 했습니다.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 부분도 참조가 되어야겠고,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좀 다르게 매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어쨌든 지금 현재는 라디오의 경우에 핵심 내용 위주로 방송 문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보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가청권역만 뽑아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렇지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읽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금액도 TV와 똑같이 할 것인가 부분은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현재 법상으로는 우리가 법 규정에 따라야지요. 정책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과태료 과거 부과사례를 보면 4건이 나와 있는데

MBC도 라디오입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TV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대부분 YTN라디오,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다 라디오이지 않습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세 군데는 라디오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라디오는 위반소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심야시간인 경우, 또 토요일·일요일 이런 경우 가뜩이나 경영사정도 점점 악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TV처럼 흘림자막 하나로 위반을 잘하지도 않을 TV와 똑같이 동등하게 매긴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규정은 규정대로 하되,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지금 현재로는 핵심 내용 위주로 방송 문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라디오방송사업자들과 의견을 나누어보고 저희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경기방송 허가권역이 어디입니까?

○ 정복덕 재난방송관리팀장

- 수원을 포함한 경기남부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수원을 포함한 경기남부로 방송허가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방송 주파수가 99.9MHz인데 들어 보면 서울에서도 잘 나오고 북부에서도 나옵니다. 아까 경기방송 측 진술에 따르면 주파수 3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통위로 출력 증강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방송이 실제로는 가청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경기방송이 허가받은 곳보다도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청권이 넓기 때문에 재난방송은 분명히 그것까지 감안해서 방송사 측에서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허가증 상의 권역이 좁다고 해서 그것만 가청권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면 실제와는 전혀 동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 있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청권역에 대해서는 '우리 가청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방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을 누락한 것은 따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 허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력한 정황은 상당히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도 과태료 50%를 경감하는 데 대해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세 분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50% 감경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름이 되고 지금 장마 기간이고 앞으로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활매체로 이를 책임진 우리 위원회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제4기 방통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민과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사업자들도 재난의 민감성을 가지고 단순히 법에 따라 해야 하는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막고 이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태료 부과조치를 통해 방통위가 국민들 입장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방송사들에게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요즘 장마철을 맞아서 더욱더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시기인데 국민의 생명과 재난,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서 이용자의 편익과 권익보호를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제4기 방통위의 뜻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9-37-147~151)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주)유컴테크놀러지, 르노삼성자동차(주)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경과로는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허가신청 공고·접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유컴테크놀러지, 르노삼성자동차(주), (주)카루, (주)더레이블, (주)위지엘 총 5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으며, 총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시 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번 허가 심사결과, (주)유컴테크놀러지, 르노삼성자동차(주) 총 2개 법인은 총 70점 이상, 심사

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나머지 3개 법인은 총점 70점 미만으로 부적격 판단이 나왔습니다. 허가조건은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 조건을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에게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붙임>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본 안건은 올해 두 번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로서 허가제의 취지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적격사업자를 걸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5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였고, 전문가 심사결과 2개 사업자만 적격으로, 3개 사업자는 부적격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의결주문 원안에 동의합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기술적 능력, 재무구조, 그리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검결과, 3개 사업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 2005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 도입 이후에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나 고객정보 관리사항들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허가조건 관련해서 3년간은 이행실적을 서면받아서 허가조건을 점검하고 있고, 실태 파악은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매년 산업동향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사업 시장 윤곽을 보고 있고, 저희가 사업자의 현황은 215개 정도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전체 현재 허가받은 사업자 수, 또 부관이나 분야별로 허가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분야별로는 별도로 파악..., 사업자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한 윤곽은 없지만 저희가 매년 KISA를 통해 산업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업자들의 윤곽은 전체 보고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연간 자료로 KISA를 통해 같이 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그러면 해외사례는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외나 국내의 규제 차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그 자료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까?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매년 해외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들의 동향은 역시 KISA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위치정보사업 관련해서 진입규제는 현재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현실적으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실제로 위치정보사업은 우리나라만 진입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할 때 정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과정에서 개인위치정보 파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필요한지는 점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고했듯이 215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215개 전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허가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비록 규제기관이지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최근에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변재일 의원을 통해 발의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지난번에 현대·기아차 약관 운영 문제들, 개인위치정보법 위반사항들 국회에서 문제된 적 있지요?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르노삼성자동차도 이번에 적격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허가해 주지만, 우리가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약관에 앞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지나갔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그 문제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소관 과인 개인정보침해조사과와 같이 협력하여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부위원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 **김석진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KBS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무 국장이 안 계시니까, KBS가 지난주에 정규 메인뉴스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보도하는 배경화면에 일장기를 상징하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로고를 넣어서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방송에서 앵커는 '일본 불매운동 방법도 갈수록 현명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멘트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즉각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다, 또 낙선운동의 의미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과 또 전 국민 수신료 거부운동 출정식을 내일 갖는다고 합니다. KBS는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밤 9시 뉴스에서 사과방송 14초짜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관련자 징계 등의 문책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과 역시 진정한 사과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그래픽은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국민의 준조세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받고 운영하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는지 묻습니다. 'NO 안 뽑아요', 'NO 안 봐요' 이렇게 쓰면서 야당과 특정 신문 로고를 넣어서 방송한 의도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방송이라면서 야당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정파적 내용을 메인뉴스에 보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KBS의 편파성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지요. 한 달 전에는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서 태양광사업 복마전을 다루면서 청와대 외압논란이 불거졌고, KBS 사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직접 해명하라는 여야 간사단의 합의조차도 두 번이나 거부하고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는데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사장도 의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인용을 했지만 과연 KBS가 BBC나 NHK처럼 공영방송의 책무를 잘 지켰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KBS는 전례 없는 경영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사업 손실이 7월 현재 1,000억원을 넘었고, 이는 하반기부터는 은행 차입금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KBS의 이같은 위기의 본질은 방송내용이 어느 한 편만 편파적으로 편들고 있기에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KBS는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국회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어느 누구의 지적이나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막무가내식 교만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방송 독립입니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을 시청해야 할 우리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통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온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물론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방통위가 KBS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게 법에 의해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청자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 지금 담당 방송정책국장이 없으니까 사무처장님이 한번 답변 주십시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저도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될까요?

○ 김석진 부위원장

-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KBS가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KBS의 시사보도 제작프로그램의 제작자들, 기자들이 더욱 더 전문성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과실이 있을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내용에 관련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방송법의 기본 취지는 방송 독립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내에서 자율적인 자정 노력으로 공정방송 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해서 스스로 내부의 자율적 규제 방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항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방통위는 그동안 KBS 이사를 추천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KBS 경영진과 KBS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구노력을 세우고 KBS의 기자와 PD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기다리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의 취지를 잘 감안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KBS 계속되는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또 KBS 출신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 방통위가 조사해서 발표한 통합 시청률 조사에서 당연히 1위를 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수신료가 투입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KBS가 가장 중요시하는 <9시 뉴스>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특정 정당 안 찍기', '특정 매체 안 보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본적으로 KBS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KBS가 날씨보도 하루 전 날 것 다음 날 낸 것, 산불보도 때 강릉에서 방송하면서 현장이라고 거짓말한 것,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것, 다 보면 방송이 공익성·공정성·신속성 모두 다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정당에 관한 문제, 다른 매체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정성·공익성의 아주 심대한 위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KBS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편성권·편집권을 보호하고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가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KBS 내에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사고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엄청난 일들을 KBS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로이 KBS 쪽에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히 징계를 해야 하고 사장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 KBS가 입장문을 내고 <9시 뉴스>에 단순히 사과만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KBS 자체적으로 우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방통위도 KBS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충분히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기왕에 KBS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처장님이 그것을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처장님의 답변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KBS에 무슨 프로그램 편성이나 내용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KBS를 포함해서 방송 전체에 대한 감독권, 추상적인 의미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독권이 KBS의 이사 선정 등등 1년 동안의 회계를 저희가

보고 받고 그것에 대해 내용을 파악한다거나 몇 가지 법에 규정된 것들은 있지만 명백하게 그 내용이나 편성 등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말하자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저희가 있는 것이지, 개입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KBS의 여러 가지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저도 그 우려에 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가 어떤 문제가 있는 보도를 한 경우에는 이번에 아까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의 보도가 있는 다음에 그 해당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요구한 대로 들어지지 않았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간다거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사기획 창>에서 태양광에 관한 보도에 대해 그것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간다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고, 이번 자유한국당에 관한 보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KBS와 그 대상이 됐던 보도 당사자 간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보도가 된 사후에 다투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방통위에서는 방통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방송사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해 봤자 아마 방송사들이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표철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방송사들이 좀 더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려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내용이나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도 방송사들이 방송한 내용에 대해 차후에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차원으로 하시고, 방통위 전체로서, 위원들 개인들로서 특정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은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그런 우려 차원으로 표명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차기 회의는 8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4분 폐회 】